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년월일 1996. 1.

제출자 제천시장

○ 제안이유

현행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수가 과다하여 실질적인 회의운영과 토의가 어려워 각종 상정안건이 형식적인 심의에 그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위원 수 및 회의개최일의 조정등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운영을 도모하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구성 운영함에 따라 조례·규칙의 의결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시정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각 국장, 당당관 및 과장' (32명)에서 '각 국장, 보건소장, 지도소장, 각 담당관 및 각국의 주무과장' (16명)으로 함 (안 제2조제3항)
- 조례규칙심의회구성으로 인하여 조례·규칙·훈령등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을 삭제 함 (안 제3조)
- 회의개최일을 '매주 화요일'에서 '매주 월요일'로 함 (안 제4조)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2

○ 참고자료 : 충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 ※ 별첨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근거법령 및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1부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증 '제3조제12호'를 '제3조제11호'로 하고 제3항증 '각 국장, 담당관 및 과장'을 '각 국장, 보건소장, 지도소장, 각 담당관, 및 각국의 주무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 내지 제15호를 제4호 내지 제14호로 한다.

제4조제1항증 '매주 화요일'을 '매주 월요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조 (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관련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③ 당연직위원은 각 국장, 담당과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에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제2조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제3조 제11호</p> <p>③ 각 국장, 보건소장, 지도소장, 각 담당과 및 각국의 주무과장</p>
<p>제3조 (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p> <p>1. ~ 3. (생략)</p> <p>4. 중요한 조례·규칙·훈령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p> <p>5. ~ 15. (생략)</p>	<p>제3조 (결정사항)</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삭제)</p> <p>4. ~ 14. (현행 제5호~제15호와 같음)</p>
<p>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 할 수 있다.</p> <p>② ~ ⑦ (생략)</p>	<p>제4조 (회의) ① 매주 월요일</p> <p>② ~ ⑦ (생략)</p>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

(제3조제11호 관련)

분야별	위원회명	근거규정
기획	1. 기획예산위원회	○ 제천시기획업무규칙 제6조
총무	1.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2. 제안심사위원회	○ 제천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제23조 ○ 제천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 제12조
사회진흥	1. 청소년자립지원기금 관리위원회	○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 조례 제3조
회계	1. 공유재산심의위원회 2. 재물조사위원회	○ 지방재정법 제78조제2항 ○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 국무총리훈령 제67호
사회	1. 생활보호위원회 2.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 심사위원회	○ 생활보호법 제16조 ○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용자조례 제7조
가정복지	1.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12조
산업	1. 초지조성심의위원회 2. 대여양곡결손처분심사 위원회 3. 농지관리위원회	○ 초지법 제4조 ○ 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 부칙 제3항 ○ 농지법 제46조
지역경제	1. 에너지절약대책위원회	○ 에너지소비절약시책실천지침

제7조 (시·읍의 설치기준)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 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군지역 전체를 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1·4·1>

1. 인구가 5만이상일 것
2. 당해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내에 거주하는 인구와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각각 전체의 60퍼센트이상일 것
3. 1인당 지방세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경향이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이 상일 것

②법 제7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읍으로 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4·7·6>

1. 인구가 2만이상일 것
2. 당해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내에 거주하는 인구와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각각 전체의 40퍼센트이상일 것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 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자치구 사무의 특례)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7·1>

제10조 (인구 50만이상 시의 사무의 특례) ①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인구 50만이상의 시"라 함은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 50만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의 예시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2 (조례·규칙심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하고자 하는 경우 및 규칙을 제정·개폐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국장 또는 실장·과장이 된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1995. 1. 14 조례 제 2호)

개정 1995. 6. 10 조례 제 161호

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실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각실국장 및 각실국의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제와 그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의 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여 이 회의가 종료하므로서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전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참석범위를 각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한 자를 위원회에 참여 시킬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중앙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주요업무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5. 이의신청과 청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국, 공유재산의 대부심사
7.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8. 간행물 발간
9. 에너지소비절약대책중 중요한 사항
10.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관리등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자립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심의, 지원기금조성, 적립 및 운영 결산과 지급 대상자선발심사
12. 관광진흥
13. 기획업무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4. 직장체육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15. 농지개혁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